

검토보고서

2022. 9. 28. (수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【교통건설국 소관】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(전문위원 유준상)

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(교통건설국)

1. 안건명

-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(교통건설국)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9월 5일(월)
- 제출자 : 마포구청장

3. 회부일자

- 2020년 9월 13일(화)

4.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(추가경정예산)
-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
(교통건설국)

I 예산규모

1. 마포구(총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(△)감	증감률
합 계	892,876,877	847,910,252	44,966,625	5.30%
일 반 회 계	828,833,549	789,017,494	39,816,055	5.05%
특 별 회 계	64,043,328	58,892,758	5,150,570	8.75%

II 일반회계

1. 교통건설국 세입예산 : 변동 없음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액	증감률
합 계	13,258,073	13,258,073	0	0%
세 외 수 입	7,878,919	7,878,919	0	0%
지 방 교 부 세	1,000,000	1,000,000	0	0%
조 정 교 부 금 등	3,677,275	3,677,275	0	0%
보 조 금	701,879	701,879	0	0%

2. 교통건설국 세출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액	증감률
합 계	33,614,690	30,239,917	3,374,773	10.04%
교통행정과	1,158,574	1,157,331	1,243	0.11%
교통지도과	91,069	91,069	0	0%
건설관리과	3,204,299	2,318,299	886,000	38.22%
도로과	20,471,585	18,377,692	2,093,893	11.39%
치수과	8,689,163	8,295,526	393,637	4.75%

3. 조직별(부서별) 세출예산 세부현황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세부사업명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액
합 계		22,199,592	18,824,819	3,374,773
교통행정과	보전지출(보조금반환금)	1,243	0	1,243
건설관리과	지중화사업(당인리발전소 앞)	319,000	0	319,000
	지중화사업(합정~상수역)	1,159,000	592,000	567,000
도로과	도로정비공사	5,139,461	4,529,461	610,000
	보도정비공사	1,010,000	860,000	150,000
	도로제설유지	1,814,677	1,604,177	210,500
	도로조명시설물유지관리	2,390,857	2,330,751	60,106
	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	6,194,378	5,150,000	1,044,378
	보전지출(보조금반환금)	18,909	0	18,909
치수과	하수도(빗물받이 등) 준설	1,353,000	1,203,000	150,000

부서명	세 부 사 업 명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액
	하 수 시 설 기 급 복 구	2,755,430	2,555,430	200,000
	보 전 지 출 (보 조 금 반 환 금)	43,637	0	43,637

Ⅲ 특별회계

1. 교통건설국 세입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액	증감률
합 계	44,113,230	41,609,520	2,503,710	6.02%
세 외 수 입	15,665,989	15,665,989	0	0%
보 조 금	2,652,307	2,652,307	0	0%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25,794,934	23,291,224	2,503,710	10.75%

2. 조직별(부서별) 세입예산 세부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액	비 고
합 계	25,794,934	23,291,224	2,503,710	
주 차 장 특 별 회 계 (교통행정과)	8,789	0	8,789	그린파킹 사업 집행잔액
주 차 장 특 별 회 계 (교통지도과)	25,786,145	23,291,224	2,494,921	순세계잉여금, 주차장관리 집행잔액

3. 교통건설국 세출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액	증감률
합 계	45,056,800	42,553,090	2,503,710	5.88%
교 통 행 정 과	30,395,340	27,931,558	2,463,782	8.82%
교 통 지 도 과	14,661,460	14,621,532	39,928	0.27%

4. 조직별(부서별) 세출예산 세부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액	비고
합 계	25,031,771	22,528,061	2,503,710	
주 차 장 특 별 회 계 (교통행정과)	24,360,073	21,906,154	2,453,919	예비비
	9,863	0	9,863	보전지출(보조금 반환)
주 차 장 특 별 회 계 (교통지도과)	648,616	621,907	26,709	주차장 관리(시설비 및 부대비)
	13,219	0	13,219	보전지출(보조금 반환)

IV 검토의견

1. 일반회계 세입·세출예산

- 2022년도 제1회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2억 5,807만 3,000원 대비 변동 없음.
- 2022년도 제1회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336억 1,4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2억 3,991만 7,000원 대비 10.04%에 해당하는 33억 7,477만 3,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음.

2.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

- 2022년도 제1회 교통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441억 1,3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6억 952만원 대비 6.02%에 해당하는 25억 371만원이 증가하였음.
- 2022년도 제1회 교통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50억 5,6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5억 5,309만원 대비 5.88%에 해당하는 25억

3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.

3. 검토의견

○ 검토의견으로는

2022년도 제1회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은 <교통행정과>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,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 시설사업 <도로과> 재설대책추진,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<치수과>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, 송문길9 주변외 3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과 특별회계 세출로는 <교통행정과> 그린파킹사업, <교통지도과>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, 공유주차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함.

○ <교통지도과> 망원1-1, 상암1, 염리공영주차장 3개소 내진보강공사, <건설관리과> 당인리발전소 앞, 합정-상수역 가공배전선로(전기·통신선 등) 지중화, <도로과> 도로·보도 보수, 제설대책 재료비 구입,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,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을 통해 손실 보상금 지급 <치수과> 관내 노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와 하수도·빗물받이 준설 사업 등으로 증액 편성함.

○ 조직별(부서별) 세출예산 세부현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조바람.

○ 금번 추경 예산안은 올해는 이례적으로 장마전선이 오랫동안 강하게 지속되어 수도권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해 도로침수,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여 보행환경 및 도로정비, 하수시설 보수공사에 따른 사전 재해 예방, 집중호우시 피해 최소화와 제설장비 확충, 지중화 사업 등 생활안전 확보를 중심으로 세입재원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.

○ 추가경정예산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(추가경정예산)의 규정에 따라 예산

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·시비 보조금 분담 비율 변동 등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,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임.

- 따라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으로서 목적적합성, 예측불가능성, 보충성, 시급성, 연내집행가능성, 한시성 등에 대하여 금번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별 편성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,
- 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(예산의 편성)제1항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심의·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